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31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강일·황명선·김남근

김남희 · 임미애 · 민병덕

정성호・허 영・강득구

황운하 • 민형배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 ·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주소·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판매대금 정산기 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마땅히 정산받아야 할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익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는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매대 금의 정산 주기를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한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
 -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물건 등의 제출
 - 4.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제98조의2에 따른 문서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 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5(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 의뢰자에게 해당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

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제1항"으로,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6으로 하고,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자가신청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의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피해보상 등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

- 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을 30일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의 개요
- 2. 관련 법령 조항
- 3. 시정방안(제3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제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

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또는 소비자원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
 ・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2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

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32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6개월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
	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u><신 설></u>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매출
	액, 소비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
	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변
	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
	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
	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
	한다)의 이행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물건 등의 제출
- 4.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에 따른 문서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 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 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

<신 설>

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 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판 매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 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 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 을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u>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32조(시정조치 등) ①	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
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u>야 한다.</u>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1	
1. ————————————————————————————————————	
1	
	1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 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 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u>제32조의2제</u> 2항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	제1항	
	<u>ਮ</u> ੋ	32조의4제2
<u>항</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 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 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 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 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 거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 는 중에 사업자가 신청을 취소 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의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등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피해보상 등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 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신 설>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을 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 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 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 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 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 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 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제32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의 개요
- 2. 관련 법령 조항
- 3. 시정방안(제32조의2제3항 후 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 을 말한다)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 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 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 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 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 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또는 소비 자원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 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 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

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⑨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2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신 설>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

 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경

 우

-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 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 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 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 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 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적용 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의 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 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 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 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 항을 준용한다.

<u>제32조의2</u>(임시중지명령) (생략)

제32조의6(임시중지명령)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